

해양오염방지법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1. 개정취지

해양오염사고시의 방제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상발생폐유의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대형선박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형 선박은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소형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수거를 용이하도록 함.

나. 종전에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폐유와 폐기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만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육상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에는 해양시설관리자에게 기름기록부를 비치하고 사용량등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 액체물질과 폐기물에 대하여도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도록 함.

라. 해역을 관할하는 해운항만청·수산청, 시·도와 대형유류공급시설을 해안에 설치한 정유사 및 선박수리조선소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폐기물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기름·폐기물의 수집을 용이하도록 함.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유회수선·유회수기등을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해양 보전과에 문의 (전화 : 02·504-9257,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종합청사) ☎

관보